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558
- 발의자 : 김평남 의원 (찬성자 22명)
- 발의일 : 2021년 8월 10일
- 회부일 : 2021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 예규 내에 마련됨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대상 및 범위, 용어 등의 수정을 통해 특정 제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행안부 예규 개정에 의해 특정기술에 해당하는 특정제품과 특정 공법 중 특정제품에 대한 선정기능만을 갖게 되어 제명 중 ‘특정 기술’을 ‘특정제품’으로 변경함.
- 나. 행안부 예규 개정에 맞추어 ‘특정기술’을 ‘특정제품’으로 변경함.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 다. 특정제품 심사대상 중 해석상의 혼돈을 해소하고자 재료원가 및 제조·구매금액을 통해 심사대상을 한정함. (안 제3조제1항)

- 라. 특정제품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에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3조제2항)
- 마. 특정심사 대상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5조제1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발생 요인 없음).
- 다. 입법예고(2021. 8. 20.~ 8. 27.) 결과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인 ‘특정기술’의 범위에서 ‘특정공법’과 ‘특정제품’을 분리하여, 이 중 ‘특정공법’과 관련된 사항 일체를 삭제하고, ‘특정제품’ 선정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 17.] [서울특별시조례 제7183호, 2019. 5. 16.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특정기술"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한다.
3. (이하 생략)

가.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는 계약 요건에 특정업체의 기술이나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특혜 시비를 제공하거나, 관련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 발주(사업)부서에서 특정한 기술(공법)이나 제품을 계약문서에 표기(조건제시 포함)하게 될 경우 그 제한입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적합한 공법이나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2019.5.16.)되었음.
- 한편, 2021년 4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이하 “예규”)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공사에 반영하는 ‘신기술·특허공법 (현행 본 조례의 ‘특정기술’ 중 ‘특정공법’) 선정기준’을 신설 규정하는 등 결과적으로 본 조례의 ‘특정공법’ 선정에 해당하는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바 있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행 2021. 4. 1.] [행정안전부예규 제135호, 2020. 12. 30.,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자치단체 공사에 반영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주요내용

- 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당 공사의 신기술 등 적용 필요성 및 평가항목, 평가방법 검토하여 결과 반영
- 나. 공사비, 공사기간, 경영상태 등 예시항목을 예규에 명시하고 자치단체가 세부평가기준 선택·적용하도록 재량권 부여
- 다.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7일(긴급 5일) 이상 공법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
- 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마. 공법 평가 후 위원별 항목 평가점수 공개

< 현황 조례 vs 예규 비교표 >

구분	서울시(조례)	행안부(예규)
대상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공법 : 신기술·특허공법 <u>순공사원가 1억원 이상인</u> 공사 *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원가계산서의 재료비+노무비+산출경비) ▶ 특정제품 : 공사사업 5천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2천만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특허공법 <u>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u> 공사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비
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과/사업소 발주부서별 상이함 ▶ 위원수 : <u>외부위원 과반 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10억미만 : 5명 이상</u> - <u>10억 이상 : 7명 이상</u> ▶ 선정방식 : 발주부서에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수 : 7명이상~10명 이내, <u>외부위원만으로 구성</u> ※ 단, 외부위원에 국기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포함 ▶ 선정방식 : 평가 전일까지 예비명부 추첨 선정
선정 절차	▶ 사전조사 및 검토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조사 및 검토 → <u>공법선정 공고(홈페이지 등)</u> → 위원회 상정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가격) : 정성평가(기술) = <u>50 : 50</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량평가(가격+경영상태) : 정성평가(기술) = <u>20(30/10) : 80(70/90)</u>
평가 결과	▶ <u>비공개</u>	▶ 위원별 세부평가점수 <u>공개</u>

- 이에 따라 재무국은 현행 본 조례의 ‘특정기술(특정제품, 특정공법)’ 중 ‘특정공법’ 선정에 대한 사항은 직접 예규상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등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 나머지 ‘특정제품’ 선정 사항에 한하여 현행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에 근거 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 현행 본 조례(제2조(정의), 제2호)의 “특정기술” = ‘특정공법’ + ‘특정제품’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은 예규, 제품 선정은 조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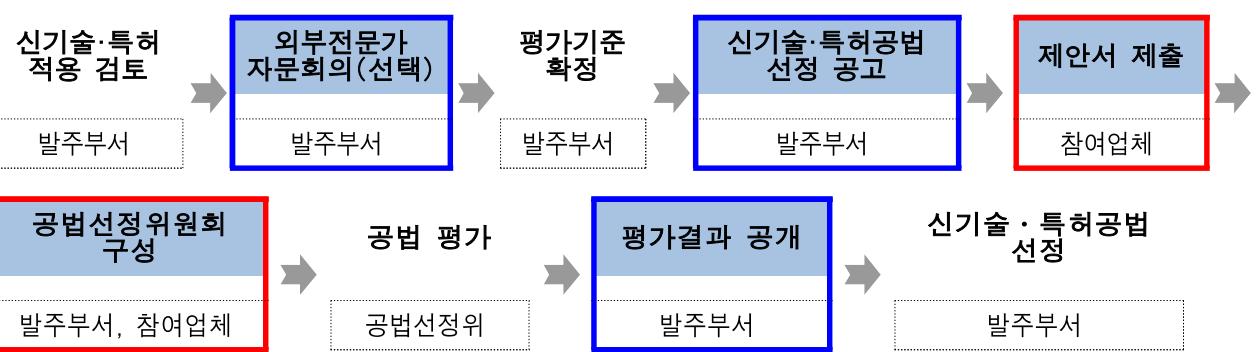
구 분	현 행	변 경('21.4.1.~)
신기술· 특허공법*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특정제품**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조례의 정의상 특정기술 중 ”특정공법“, ** 현행 조례의 정의상 특정기술 중 ”특정제품“

※ 예규에서는 본 조례의 ‘특정제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본 개정조례안은 결국 현행 조례에서 ‘특정공법’ 사항을 제외시키기 위하여 “특정기술”을 “특정제품”으로 개정 하는 등 본 조례와 예규상의 중복 또는 상충되는 조문과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여 운영상 혼란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예규상 선정심사 운영 절차



- ※ 예규가 조례보다 선정기준 측면에서 외부위원 확대, 공고 절차 마련, 평가점수 공개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 ※ 한편, 본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본 조례 시행(2019.11.17.)후 선정심사의 규모 총 1,428건(심사금액 9,881억원)에서 68.8%(983건, 심사금액 3,916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 현행 조례상 ‘특정기술(특정제품/특정공법) 선정심사 운영 실적 >

- 운영기간 : 2019.11.17.(조례 제정 시행)~ 2021.7.31.
- 제출기관 :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65개
- 운영실적 : 총 개최횟수 1,428회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1. 17.) [서울특별시조례 제7183호, 2019. 5. 16., 제정]

구분	개최횟수 (건)	심사금액 (백만원)	위원회 개최 비용 (천원)	비고
합 계	1,428	988,172	886,102	
특정제품	983	391,575	786,755	
특정공법	445	596,597	99,347	

나. 세부 내용 검토

1) 특정기술 관련 용어 개정(‘특정기술’ → ‘특정제품’)(안 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

- 안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8조 중 “특정기술”을 “특정제품”으로 용어를 개정하려는 안은, 예규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특정공법(예규상 신기술·특허 공법)’에 대한 사항을 직접 예규를 적용하게 되어 이를 본 조례에서 제외 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시행 2021. 4. 1., 행정안전부예규 제135호, 2020. 12. 30.,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

종 전	현 행	비고
<p>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p> <p>2. 제한요령</p> <p>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p> <p>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p> <p> 가) ~ 라) (생략)</p> <p> <u><신 설></u></p> <p> 마)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께 있어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용한다.</p>	<p>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p> <p>2. 제한요령</p> <p>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p> <p>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p> <p> 가) ~ 라) (현행과 같음)</p> <p> 마) <u>발주(사업)부서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별표2>에 따라 공법을 선정한다.</u></p> <p> 바)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께 있어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용한다.</p>	<p>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조문 정리</p>

<별표 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p>제1절 통 칙</p> <p>1. 목 적</p> <p> 01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2. 적용대상 (이하 생략)</p>

- 본 조례 적용범위를 “특정제품”에 한정시키고, 예규와의 용어 및 규정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도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u>특정기술</u>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p>서울특별시 <u>특정제품</u>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 ‘특정기술’을 ‘특정제품’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2) 특정제품의 정의, 신기술·특허공법 관련 사항 제외(제2조)

- 안 제2조는 특정제품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여 규정하면서 본 개정조례 안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현행 특정공법(예규상 신기술·특허공법)에 해당하는 용어와 정의사항 등을 삭제하려는 것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u>"특정기술"</u> 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u>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u>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u>제품이나 공법</u> 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u>특정제품·특정공법</u>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특정제품"</u> ----- ----- <u>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u> ----- ----- <u>제품</u> ----- ----- <u>제품</u> ----- -----.
3. “재료원가”란 동일 특정제품의 구성 물품 가격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삭제>
4. “순공사원가”란 공사원가계산서(또는 설계내역서)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금액(제경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삭제>

- 이에 따라 현행 “특정공법”과 관련한 ‘공법·신기술·특허·특정공법·순자산원가’ 등 용어 및 정의를 일괄 삭제하되, “재료원가”的 정의 사항은 안 제3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3) 특정제품 심사 대상 및 범위 조정(안 제3조제1항)

- 안 제3조는 심사 대상 특정제품 선정 금액기준으로 재료원가와 제조·구매 대상 금액 범위와 조문체계의 정비를 통해 특정제품 제조·구매에 대한 심사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안 제3조는 현 조례(제2조제3호)에서 재료원가 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규정해온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 특정제품의 재료원가(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물품제조·구매금액(안 제3조제1항 제2호)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대상 금액 산정에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특정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선정심사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 ※ “특정제품”이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물품제조 · 구매 발주시 물품 등에 대한 제조업체명, 제품모델명, 특정규격(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조건 제시 포함)함으로써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의 제품을 의미함(안 제2조제2호).
 -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제나목)”에도 이를 선정심사 대상으로 규정하여, 동일 특정제품 제조·구매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이를 포함한 기타 특정제품 제조·구매액과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제조·구매사업에 포함된 모든 특정제품을 선정심사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재무국은 본 규정이 심사대상 특정제품(동일 물품 제조·구매 합계 2천만원 초과)과 비심사 대상(동일 물품 제조·구매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의 총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현행 운영방법), 비심사대상(동일 물품 제조·구매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의 총 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심사대상 특정제품이 1건만 포함될 경우에도 해당 제조·구매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모두를 심사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심사건수 과다로 사업추진의 지연 및 분리발주(한 제조·구매사업을 특정/비특정 제품으로 분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적 측면을 개선하고자, 한 개의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 제품 중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제나목)”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 해당 물품제조·구매 사업에서 선정 심사대상을 동일 특정제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특정제품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 다만, 특정제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제한입찰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취지로 볼 때,
- 업무 경감 등을 위하여 제조·구매 합계액이 총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에서 개별 특정제품 구매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의 특정제품을 심사대상에서 배제 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의 적정성 및 개정실익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재무국에서는 해당 물품 제조 · 구매사업 내의 특정제품에 한하여 선정심사만 이행 하더라도, 건설공사와는 달리, 특혜시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u>특정기술</u>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 <u>특정제품</u> -----

<후단 신설>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 초과

나.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 공사원가 합계가 1억 원 초과

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 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나.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 금액 합계가 1억원 초과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

2.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

<신 설>

----.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1. -----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

<p>③ 그밖에 심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p>	<p><u>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u><삭 제></u></p>
---	--

4) 특정제품 심사 제외(제3조제2항)

- 안 제3조제2항은 선정심사 제외 사항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제2호)와 시장시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 선정심사 절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p> <p>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p> <p>2.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u><삭 제></u></p> <p>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p> <p>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p> <p>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③ 그밖에 심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
한다.

<삭 제>

- 다만, 안 제3조제2항제3호의 시장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범위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포괄적인 것은 아닌지, ‘특정 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 할 여지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규칙 등에 선정심사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예시나 범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예측가능한 심사제외 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